第243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7 號

國 會 事 務 處

2003年11月10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7次本會議)

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4.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

附議된案件

o 의사진행의건 …… 1
o 의사일정상정의건 …… 6
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김용균 의원 발의)(김용균 의원 외 147인 발의) …… 7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8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 8
4.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8
5.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제출) …… 8
6.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8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10

(14시48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국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건

(14시5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들어 왔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같은 발언을 계속하면 발언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웅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웅 의원 열린우리당의 이호웅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다수당의 의회 권력 횡포임을 지적합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특검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략특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후에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기습 상정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이고 또 SK 비자금 사건에 대한 물타기 시도입니다.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상정한 것은 이것이 바로 崔秉烈 대표가 천명했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1당의 원내총무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기습 상정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에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흉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습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SK 비자금 100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지난 대선 때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관계자들끼리도 서로 몰라서 전전긍긍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덮어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럽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4일 회의 개의 직후 한나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라고 운운하며 의사일정의 변경 요구 및 특검법 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작 발언자의 진의가 어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을 운운하는, 국민에게 핑계대는 이러한 태도는 한나라당이 과연 진정한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자진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SK 100억 수수 관계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또 종적을 감추고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설을 바탕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崔秉烈 대표가 대선자금 자진 공개를 공언하고 그날로 다시 백지화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다수당의 특검법 제안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이제 지쳤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남의 잘못을 들추기 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 대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나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며 양심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주장에도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골적인 동조 및 기권이라는 이러한 정치 행태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네 정치는 이제 네 편 내 편 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각 당이 스스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상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洪準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洪準杓 議員 오늘 특검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런 법안이 필요가 없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는 쌍끌이식 수사를 하고 여당 盧武鉉 후보 측에 대해서는 강태공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안 상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도술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눈이 깜깜했다는 그런 돈은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그 돈은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을 걸은 그런 비리는 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도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 직을 걸었다", "눈이 깜깜하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과 무관하고, SK로부터 11억 받아 가지고 개인채무 쓰고, 전부 개인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권력비리수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직을 걸은 비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지역선대본부 관련 부산상공회의소 의장 주도로, 김성철 씨 주도로

수백억 거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간담회 하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검 통과하겠다고 우리가 공언하기 하루 전에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태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최도술 씨 자신이 최근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재현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호송차 속에서 이재현 씨한테 개인 비리로 치부한다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 SK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은 2월 19일에 서울지검에서 이미 조사된 사건입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5월에 중수부로 자료가 가서 이미 확인하고도 여태 숨겨 왔습니다. 이런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길승 씨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14년 전에 이원호 씨가 자행한 살인교사사건 무마 목적으로 50억 원이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이원호 씨가 14년 전 자신의 살인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청주에 있는 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측근에게 50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를 하던 검사만 몰카 사건으로 변질시켜 구속해 버리고 사건이 은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썬앤문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지검 조사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에게 1000만 원을 주고 盧武鉉 대통령 후보에게 95억 원을 주었다는 녹취록의 기재가 있습니다. 압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썬앤문 사건은 지난 5월에 제기가 되었는데 감세 의혹이 있었습니다. 썬앤문에 18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25억 원으로 감세가 되었습니다. 155억 원이 줄었는데 이 155억 원을 서울지방국세청의 홍성근 과장 혼자서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녹취록에 보면 盧武鉉 후보 측에 95억 원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연관된 사건은 특검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화이트워터 사건에서 검찰 수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바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은폐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인지 토론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마 합의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저는 사회를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검찰권은 준사법 행위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입니다. 헌법 제6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검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하게 의심을 받을 경우, 두 번째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세 번째 검찰이 아예 수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중립성이 뭐가 의심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60~70% 이상은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의 보약을 지어다 줄 정도로 열렬한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검찰을 수없이 칭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현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긴급한 필요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100억 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은 대선 기간 동안 각 지구당에 공식적 자금 외에 1억 4000만 원씩 약 400억 원의 현금이 배포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막아야 될 긴급한 필요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방탄 특검이 제출된 것입니까?

두 번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洪準杓 의원께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 사건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돈 1억 원을 먹어도 눈앞이 캄캄한 사람이 있고 100억 원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기준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도술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11월 3일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원호 사건에 대해서도 4000여 개의 계좌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 이용호 사건 모두 다 사건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서 특검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 거부의 경우입니다.

이광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의 단서가 없어서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고발할 정도의 객관적 혐의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무원칙하게 설을 떠드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광재 본인 스스로도 고발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각 고발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어떤 설만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면 나와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옛말에 빈 총도 맞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검의 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현저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입법권 남용의 측면이 큽니다. 특검은 예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다수의 힘으로 특검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검찰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항상 盧武鉉 대통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 포퓰리즘, 즉 대중추수주의에 대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즉 무죄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 줄 의무가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오로지 언론의 주시 속에서 인기에 영합해서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사건도 침소봉대되고 언론은 흥미 위주로 그때그때 수사 결과를 보도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동지 여러분, 옷로비 사건의 특검을 통해서 그러한 실체적 사실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모피코트 한번 입었다 벗어 놓았던 사건을 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입법권 남용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민여론은 57% 이상이 측근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 맡겨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 특검법안은 철회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에는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鈞 議員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대통령선거자금 비자금 수사,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큰 시대적 국민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 수사와 심판은 독립된 중립적 기구가 행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을 들고 공정한 심판을 내립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에 의한 대선자금 비리 부정과 야당에 의한 대선자금 비리가 동시에 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나 태도를 볼 때 야당에 대해서는 신속 강경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여당과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미온적

일 뿐만 아니라 마치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적절히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는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근 비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사를 기피하다가, 또 미온적인 수사를 계속하다가 국회에서 특검한다고 하니까 약간 변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종금, 굿모닝시티, 현대비자금, 최도술·이광재·양길승 사건 등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盧武鉉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검사장 16명이 퇴출되었습니다. 검사의 신분보장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아야 되고 공정수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원회 특검법 심의 때 심각한, 이 주요한 법안의 심의를 코미디 운운하면서 비꼬는 상태에서 그 법안 심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안검사들과 검사장, 차장검사를 모아 놓고 같이 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자꾸 검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밥 먹이고 훈시하고 대화하고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검찰의 중립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독립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측근 비리 수사의 공정성이 기대되지 않아서 특별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방탄용이다, 물 타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자체를 이것은 검찰이, 또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탄로를 막고 대통령의 불신임을 저지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재신임용, 신당 창당용, 방탄용 수사라고 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국회에 행정부의 존중을 요구하려면 행정부도 국회의 이러한 입법활동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혼란과 경제 파탄이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강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 국민 다 죽습니다. 이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측근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깨끗한 정치혁명, 명예혁명을 이룩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이 법안의 심의 의결을 촉구합니다.

○議長 朴寬用 마지막으로 이종걸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당은 검찰 수사에 100% 응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방탄국회로 거의 출석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100억의 현금 돈다발이 나오자 몇 번 출석한 것 가지고 쌍끌이 수사라고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특검법에 관한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님과 토론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왜 이 법을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원님은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특검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이 취지대로라도 특검법은 '정치공작에 대응하는 정치공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다발 100억짜리가 주차장에서 공당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속속 또 드러날 것이라고 예견되는 이 마당에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정치공작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정치입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법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으로 정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금지되는 특수목적만의 완전한 처분법률이기 때문에 극히 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특검법은 개정된 국회법 제59조에 규정된 '위원회 회부 후 15일 경과'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자신의 비리 은폐를 위해서는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저지해야 한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 말고는 이 특검법이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 발언이 중복되어서 생략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의혹이 남게 될 경우 특별검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네 차례의 특별검사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이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 여부를 정치권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기피한 경우에 행해졌다는 선례를 보더라도 이 법이 수사 대상부터 무리하게 잡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간 규정을 보면 한나라당이 이 법을 얼마나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총 9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특검법에서 60일이나 120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장기간입니다.

대북 비밀송금처럼 남북한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 사건 진행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났고, 또 고도의 국가비밀이었던 사안도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수사 기간을 90일로 잡는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17대 총선을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부한 정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의 경우 과거 특검법들과는 달리 연장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만 하고 대통령의 승인 없이 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의 연장 자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굳이 수사기간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특검법에서 16명 내지 24명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 특검법은 정치적 목적하에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최대 48인까지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과다한 수사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이 가결된다면 경제회생에 앞장서야 할 기업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특검과 검찰의 이중 수사·기소로 고통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권능이 한 정당의 정략적 도구로 침몰하고 신성한 입법권을 희화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16대 국회가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16대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朴寬用 민주당의 尹鐵相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발언하십시오.

○尹鐵相 議員 민주당의 尹鐵相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특검비리를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그 배경은 우리 국민의 69%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대선비자금 수사가 미진할 때는 11월 말까지 지켜보고 나서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특검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15시2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관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오늘 상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반

대하시는 분은 ‘반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3인, 기권 6인으로서 의사일정제1항상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일부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김용균 의원 발의)

(김용균 의원 외 147인 발의)

(15시2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규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심규철 법제사법위원회 심규철 의원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검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착잡한 심경을 표현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盧武鉉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이광재·양길승·이영로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이 법안이 기존 3건의 특별검사법의 규정 체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특별검사법과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盧武鉉 대통령후보 부산 지역 후원회장 관련 불법자금모금·수수의혹사건, 썬앤문 그룹 측이 대선을 전후하여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盧武鉉 후보 측에 제공한 95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과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하여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검사보는 3인으로 하고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호의 사건마다 20인 이내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수사기간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검사가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2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 중 ‘비리사건’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어서 이를 ‘비리의혹사건’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2조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건이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특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셋째, 안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고, 종전의 특별검사법에 의한 임명절차가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

로 특별검사 후보를 종전의 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그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였고,

넷째, 안 제7조 특별수사관의 인원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건마다 20인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둔다면 최대 60인까지 임명할 수 있어서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각호의 사건마다 16인 이내로 축소하도록 수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9조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1차 3개월, 연장할 경우 2개월 등 총 5개월이 소요되는바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1차 60일, 연장할 경우 30일 등 총 90일로 축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4.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6.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시29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允洙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允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允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과 2003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결산에 관해서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국회의 사후조치권과 감사청구권의 신설이라는 제도개선의 결과이며, 앞으로 국회 결산 심사는 종전과는 달리 결산상의 문제점과 이의 시정에 관한 국회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반영되게 됨으로써 결산 심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원안대로 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9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

다.

시정요구사항을 유형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52건,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해서 25건, 위법 또는 부적절한 집행 사례 58건, 회계처리 오류 등과 관련해서 4건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55건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2002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149건의 시정요구사항 중에 감사원의 기 감사 조치 등으로 시정이 이루어졌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따로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31건은 제외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감사원과 정부에 대하여 총 20건의 촉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기초생활안정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청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5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감사청구사항은 첫째,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는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등 공사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검찰에 의하여 구속된 송두율을 행정자치부 산하 공익법인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거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초청함으로 인하여 동 사업회 본래의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동 사업회에 대한 직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였고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과 다른 별도의 기준, 즉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적용함은 물론 95년부터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맺고 일반복리비 항목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매년 40여억 원씩 총 340여억 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예산 집행으로 국회의 결산 승인을 받지 못했고 감사원이 01년도 공기업경영구조개선사후관리실태 감사에서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연금을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 조치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KBS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다목적헬기도입사업은 2조 4000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13조 원의 양산비용 등 총 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헬기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4년 예산안에 국방부는 연구개발비로 50억 원, 산업자원부는 헬기 기술 국산화 사업비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바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해외 도입과 자체개발을 비교한 수익비용이 04년 9월까지 작성 예정인 KMH개발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개발계획 수립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특검법 투표 중에 민주당 소속 金芳林 의원이 투표 버튼을 오작해서 기권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찬성하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회계연도기금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 2002회계연도기금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 만장일치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에 천천히 누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5인, 기권 3인으로서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결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결산이 의결됨으로써 2002년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작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특히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41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의사일정상정의건

투표의원(221인)

찬성의원(182인)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창 성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룡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선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근혜
박명환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송훈석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유한열 유흥수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완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문화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창화 정철기 조부영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최돈웅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영희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33인)

강봉균 김근태 김덕규 김명섭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택기
김홍신 김희선 문석호 박병석
배기선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강래
이부영 이상수 이우재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정동영
정범구 정장선 천정배 최용규
홍재형

기권의원(6인)

김옥두 박관용 박인상 안대륜
조희욱 한화갑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193인)

찬성의원(184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창성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근혜 박명환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완구 이용삼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훈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문화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창화
정철기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최돈웅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2인)

김홍신 정범구

기권의원(7인)

김종호 박관용 배기운 송훈석
오장섭 조성준 한화갑

(김방림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93인, 찬성의원 184인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198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원웅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택기 김학송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2인)

배기선 안영근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투표의원(201인)

찬성의원(199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원웅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봉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최용규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2인)

유재규 최재승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투표의원(208인)

찬성의원(208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원웅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의원(208인)

찬성의원(208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원웅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주진우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이윤성 의원 버튼 미조작, 김희선·송광호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재석의원 208인, 찬성의원 208인임)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

투표의원(208인)

찬성의원(180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성순 김성조
김영선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운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손 희 정　송 광 호　송 훈 석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대 륜　안 상 수　안 상 현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희 룡　유 용 태
유 재 규　유 흥 수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낙 연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희　이 성 헌　이 승 철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한 구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훈 평　임 인 배　임 진 출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창 화　정 철 기　조 성 준　조 순 형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주 진 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종　홍 준 표　황 우 여

반대의원(25인)

강 봉 균　김 근 태　김 영 춘　김 원 웅
김 택 기　김 희 선　문 석 호　배 기 선
설 송 웅　송 영 길　신 기 남　안 영 근
유 시 민　유 재 건　이 부 영　이 상 수
이 종 걸　이 창 복　이 호 웅　임 종 석
정 동 영　정 동 채　정 세 균　정 장 선
천 정 배

기권의원(3인)

김 부 겸　박 병 석　홍 재 형

○出席議員(236人)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姜 雲 太
姜 仁 燮　姜 昌 成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권 영 세
權 五 乙　權 哲 賢　權 泰 望　金 敬 天
金 光 元　김 근 태　金 杞 培　金 淇 春

김 덕 규　金 德 龍　金 東 旭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金 武 星　金 文 洙
金 芳 林　金 秉 浩　김 부 겸　김 상 현
金 聖 順　김 성 조　金 映 宣　김 영 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雲 龍　金 元 吉　김 원 웅
金 允 式　김 일 윤　金 政 夫　김 정 숙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燦 于
金 忠 兆　金 台 植　김 택 기　金 鶴 松
金 學 元　김 형 오　김 홍 신　金 晃 植
金 孝 錫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都 鍾 伊　孟 亨 奎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朴 寬 用　朴 槿 惠　朴 明 煥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承 國　박 시 균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鍾 浣　朴 宗 雨　朴 鍾 雄　박 종 희
朴 柱 宣　朴 柱 千　박　진　박 창 달
朴 憲 基　박 혁 규　朴 熺 太　배 기 선
裵 奇 雲　白 承 弘　서 병 수　서 상 섭
徐 廷 和　徐 淸 源　설 송 웅　손 희 정
송 광 호　송 영 길　송 영 진　송 훈 석
辛 卿 植　신 계 륜　신 기 남　申 榮 國
申 榮 均　신 현 태　심 규 철　沈 載 權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대 륜　安 東 善
安 商 守　安 相 賢　안 택 수　梁 承 富
梁 正 圭　嚴 虎 聲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元 裕 哲　원 희 룡　유 시 민
劉 容 泰　유 재 건　柳 在 珪　柳 漢 烈
柳 興 洙　윤 경 식　윤 두 환　尹 汝 雋
尹 榮 卓　尹 鐵 相　尹 漢 道　李 康 斗
이 강 래　李 敬 在　이 규 택　李 根 鎭
이 낙 연　李 方 鎬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李 相 培　이 상 수　李 祥 羲
이 성 헌　이 승 철　李 良 熙　李 完 九
李 龍 三　이 우 재　李 元 昌　이 원 형
李 允 盛　李 允 洙　李 仁 基　이 인 제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昌　李 正 一
이 종 걸　李 柱 榮　이 창 복　李 漢 久
李 海 龜　이 해 봉　李　協　이 호 웅
李 訓 平　林 仁 培　임 종 석　林 鎭 出
任 太 熙　張 光 根　張 誠 源　張 在 植
田 瑢 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鄭 均 桓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鄭 宇 澤

정 의 화　정 장 선　鄭 鎭 碩　정 창 화
鄭 哲 基　趙 富 英　조 성 준　趙 舜 衡
曺 雄 奎　趙 在 煥　조 정 무　趙 漢 天
曺 喜 旭　朱 鎭 旺　천 정 배　崔 燉 雄
崔 明 憲　崔 炳 國　崔 秉 烈　崔 善 榮
崔 鉛 熙　崔 榮 熙　최 용 규　최 재 승
秋 美 愛　河 舜 鳳　韓 忠 洙　韓 和 甲
咸 錫 宰　許 泰 烈　玄 敬 大　홍 문 종
洪 思 德　홍 재 형　洪 準 杓　황 우 여

○出張議員(1人)

안 영 근

○請暇議員(11人)

강 숙 자　金 景 梓　김 덕 배　김 성 호
김 태 홍　남 궁 석　李 嬿 淑　이 원 성
이 해 찬　張 泰 玩　全 甲 吉

○出席國務委員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金 振 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尹 德 弘
외교통상부장관	尹 永 寬
법무부장관	康 錦 實
국방부장관	曺 永 吉
문화관광부장관	李 滄 東
산업자원부장관	尹 鎭 植
정보통신부장관	陳 大 濟
보건복지부장관	金 花 中
환경부장관	韓 明 淑
노동부장관	權 奇 洪
여성부장관	池 銀 姬
건설교통부장관	崔 鍾 璨
해양수산부장관	張 丞 玕
기획예산처장관	朴 奉 欽

○出席政府委員

통일부차관	趙 建 植
행정자치부차관	金 住 炫
과학기술부차관	權 五 甲

【報告事項】

○議案提出

관세법중개정법률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2004년도에만기도래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을위하여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주택법중개정법률안(설송웅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설송웅·김명섭·김광원·정동영·이강래·장재식·이호웅·김경재·구종태·이희규·송영진·조한천 의원 발의)

11월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靑少年基本法中改正法律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황우여·권철현·김정숙·박재욱·박창달·설훈·엄호성·윤한도·이경재·이재오 의원 발의)

11월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2건 11월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情報通信工事業法中改正法律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이원형·김찬우·박희태·박원홍·이인기·양정규·이윤성·박재욱·이재오·김락기·김성순·이규택·조웅규·도종이·안택수·정병국·정창화·이상배·박세환·백승홍·조성준·장성원·김명섭·김홍신·오경훈·박헌기·권오을·김무성·박시균·박승국·이재선·김광원·윤경식·황우여·심재철 의원 발의)

11월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안

(11월7일 정부 제출)

11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김효석·강운태·구종태·한화갑·정동영·강봉균·송영길·임종석·박상희·이용삼 의원 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강봉균·강운태·김효석·남궁석·이희규·이종걸·정철기·장재식·정세균·이해찬·박주선·송영길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강봉균·강운태·김효석·남궁석·이희규·이종걸·정철기·장재식·정세균·이해찬·박주선·송영길 의원 발의)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강봉균·강운태·김효석·남궁석·이희규·이종걸·정철기·장재식·정세균·이해찬·박주선·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水道法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박승국·임인배·이상배·김광원·이경재·김찬우·김일윤·도종이·박시균·김정숙·김락기 의원 발의)

11월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11월7일 홍사덕 의원 외 147인 발의)

자원봉사진흥법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전갑길·최선영·이낙연·이강래·김운용·유재규·이훈평·정철기·조재환·김경재 의원 발의)

11월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김명섭·이재오·이용삼·김찬우·권기술·김성순·이원형·조희욱·안영근·설송웅·박시균·박상희·민봉기·남궁석·김홍신 의원 발의)

11월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이상 5건 11월8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11월1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11월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조성준 의원 대표발의)

(11월8일 조성준·김상현·김부겸·정동채·이협·최선영·신기남·고진부·김태홍·장재식·김형오·한충수·박명환·안상수·최재승·장성원·안택수·김홍신·심재권 의원 발의)

11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道路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11월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11월1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야생동·식물보호법안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11월8일 김홍신·유시민·김명섭·김성순·김부겸·안영근·김경천·조성준·심재권·이우재 의원 발의)

11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11월8일 김문수·권태망·김만제·김영선·김용균·김원길·김윤식·남경필·맹형규·박진·박상규·박원홍·박종희·서상섭·심규철·안상수·안택수·유용태·이근진·이방호·이상배·이성헌·이재오·이주영·임인배·임진출·임태희·전용원·정갑윤·정문화·정병국·조성준·조정무·주진우·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

11월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02회계연도결산심사결과에따른감사청구안

(11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휴회의건

(11월10일 의장 제의)

11월11일
11월20일 (10일간)

○議案審査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 8월29일 정부 제출)

2003년도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의결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김용균 의원 발의)

(10월31일 김용균 의원 외 147인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請願提出

서대문구현저동군부대이전부지확보에관한청원

(2003년11월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46 양해정으로부터 이성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인노무사법부칙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본동 1708-1 두산아파트 203-1102 이상각 외 219인으로부터 전재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書面答辯書提出

문화예술관련기관의인사문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스크린쿼터제유지방안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11월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